



보도시점

2023. 7. 5.(수) 11:00
7. 6.(목) 조간

배포

2023. 7. 5.(수) 09:00

반려동물 사료 안전성·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

-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 검사 및 허위·과장 등 표시사항 점검 -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서해동, 이하 농관원)은 수제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7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·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.

이번 점검은 온라인 장터(오픈마켓)·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, 중금속 7종, 동물용의약품 27종,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.

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(등록성분량,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)과 허위·과장 광고를 점검하고, ‘무보존제’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.

* 보존제: 항산화제 3성분(에톡시퀸, BHA, BHT), 산미제 2(소르빈산, 안식향산)

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,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고,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.

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“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하면서, “사료를 제조·수입 및 유통·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·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붙임 포장재 표시사항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	책임자	과 장	최남근	(054-429-4131)
		담당자	사무관	최영호	(054-429-4135)

□ **포장재 표시사항** * [별표4] 「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」 발체

① **사료의 성분등록번호: 성분등록번호 기재 여부**

② **사료의 명칭 및 형태**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·단미·보조사료의 명칭*과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(가루, 펠렛, 후레이크, 그 밖의 형태 등)

*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1] ~ [별표3] 사료의 범위 참조

③ **등록성분량**

- 「사료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 된 성분명과 성분량

* 성분량은 백분율(%), 최저량에는 “이상”, 최대량에는 “이하”로 표시

*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제9조 [별표11]~[별표13] 단미·보조·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참조

④ **사용한 원료의 명칭**

- 배합(사용)비율이 높은 순의 명칭 표시여부 등

⑤ **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**

-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했는지 여부

⑥ **주의사항**

- 사료의 사용과 보관,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

(주의)

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했는지 여부

-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의 “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” 등의 세부 표시사항

⑨ **제조(수입)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**

- 제조(수입)포장된 날짜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시 여부

⑩ **제조(수입)업자의 상호·주소 및 전화번호**

-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, 전화번호

* 제조업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입한 경우 제조업체 연락처 생략표기 가능(소비안전과-2045, '16.6.23.)

⑫ **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**

-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표시사항

*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15]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3. 파

- 허위 및 과장 표시·광고의 범위 위반 여부 등

*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15]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4.